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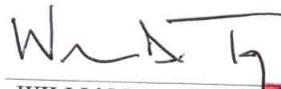
지휘서신 제8호: 비위사실 처리 위임불가 원칙

1. 본 지휘서신은 비위사실 처리 위임불가 원칙 관련 기존의 모든 서신에 우선한다. 본 서신의 효력은 철회 또는 대체되기 전까지 유지된다.
2. 목적: 제2보병사단/한미연합사단 내의 비위사실에 관한 사단장의 처분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 위함이다.
3. 범위: 이 지휘서신의 내용은 제2보병사단/한미연합사단 소속 및 예하의 인원과 제2보병사단/한미연합사단의 보통군사법원 회부결정권의 관할에 속하는 자에게 적용된다.
4. 사단 미만 위임금지 원칙: 군사법원규칙 제306조 a항에 따라 사단장은 고위 간부(모든 장교 및 준사관, 상사(E-8) 이상의 부사관을 말한다)의 비위혐의사실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.
 - 가. 예하 지휘관들은 고위 간부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는 비위혐의사실을 인지한 경우 24시간 이내로 사단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한다. 이때 사단 법무참모를 참조 수신자로 한다.
 - 나. 이 원칙에 의하여 사단장으로부터의 위임이 금지되는 권한은 군형법상의 군사법원 회부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, 징계(미 군형법 제15조)권한, 현역복무적부심사 권한, 경고장 발부 권한이다.
 - 다. 예하 지휘관들은 범죄수사단(CID)의 관할(가령 성폭력 사건)이 아닌 고위 간부의 비위혐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개시할 권한을 가지며, 조사 내용 및 그에 따른 의견을 사단장에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.
 - 라. 예하 지휘관들은 업무 지도, 초동 조사, 직무 배제, 육규 600-20 및 육규 623-3에 따른 보직해임, 군사법원규칙 307조에 따른 고소·고발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.
 - 마. 예하 지휘관들은 사단장이 권한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, 가능한 경우 중대장 및 대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건의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. 처분권자에 대한 처분 건의 및 처분에 관한 의견은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사단장에게 송부하며, 모든 사건에 관하여 법무참모를 참조 수신자로 한다.
5. 특별군사법원 회부결정권자의 권한

다음의 혐의사실에 관한 처분권한은 특별군사법원 회부결정권자만이 가진다: 공무집행방해(미 군형법 제128조), 가정폭력(제128조의b), 부적절한 친목행위(제134조), 강간 등 성폭력,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성폭력, 기타의 성군기위반(제120조, 제120조의b 및 제120조의c), 개인의 인종, 피부색, 종교, 국적, 성적 지향, 성 및 성정체성,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, 편견, 성차별 및 성폭력, 폭력행위 등의 혐의, 대한민국 국적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모든 범죄행위.

위 혐의의 사건은 사안에 따라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될 수 있으며, 위임할 경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
6. 특정 사건에 관한 현역적부심사의 필요적 개시
군인에 대하여 미 군형법 제120조(강간 등 성폭력), 제120조의b(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), 120조의c(기타의 성군기위반)에 해당하는 혐의 및 가정폭력, 성폭력 사건에 관한 합리적인 정황에 따른 수사가 개시될 경우, 현역적부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인원의 복무 적부의 심사를 개시한다. 각급 지휘관이 해당 인원을 계속 복무하게 하고자 할 경우, 최종 결정 권한은 보통군사법원 회부결정권자인 사단장에 있다. 단 위 내용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미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, 징계 등 절차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, 징벌적 전역을 명할 권한이 있는 군사재판에서 전역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7. 예하 지휘관은 위임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관하여는 처분 권한 및 재량을 가진다. 권한의 위임이 금지되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는 어떠한 지휘관도 예하의 지휘관에게 처분 또는 의견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.
8. 이 지휘서신에 관한 담당부서는 사단 법무참모부로 하며 담당자는 사단 군검찰부장 (DSN 756-7425)으로 한다. 끝.


WILLIAM D. TAYLOR
Major General, USA
Commanding

